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1나25749 양수금
원고, 피항소인 A
피고, 항소인 B
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
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가합19 판결
변 론 종 결 2022. 3. 18.
판 결 선 고 2022. 4. 8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제1심 공동피고 C, 피고는 공동하여 700,000,000원, 제1심 공동피고 Dsms
위 C,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6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. 10. 21.부터

2020. 12. 31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[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, D(이하 '제1심 공동피고' 부분
은 생략한다)에 대한 부분은 분리·확정되었다]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E는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921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
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. 7. 8. "E에게, 가. C, 피고는 각자 700,000,000원, 나. D,
F은 C,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26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. 10. 21.부터 다
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
고, 위 판결은 E와 C, 피고, D 사이에서 2011. 7. 29. 확정되었다(이하 위 판결에 의한
E의 C, 피고, D에 대한 채권을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2017. 11. 14.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, 2021. 1. 4. 이 사건
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
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에게, 피고, C는 공동하여 700,000,000원, D은 피고, C와
공동하여 위 돈 중 26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.

10. 21.부터 2020. 12. 31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면책 항변 및 원고의 비면책채권 재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14. 11. 27.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5035호 및 2014하면503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. 8. 2.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, 위 결정이 2017. 11. 4. 확정된 사실,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E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한편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(이하 '채무자회생법'이라 한다) 제566조 제3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'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'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, 위 기초 사실과 갑 제1호증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대구지방법원 2011. 7. 8. 선고 2010가합9218 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의 성립 이유에 관하여 "피고, C가 E의 채권최고액 700,000,000원인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기망행위는 E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, C는 E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근저당권 상당의 손해 7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."라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'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'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,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,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[이에 대하여 피고는, E가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

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'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'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, 피고에 대한 채권 중 비면책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면책이 허가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(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2016라405호 결정문 참조),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]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강동명
	판사	김규화
	판사	이영제